

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2023-001호

시정권고 재결

2022년 12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월 11일
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

사 건 명 : 어선 성운호 잠수부사망사건

피요청자 : 김** (거제시 *** ***)

시 정 권 고 서

귀하가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는 성운호에서 2021. 10. 26. 06:50경 잠수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

이 잠수부사망사건의 주된 원인은 잠수기어업 중 귀하의 부주의로 공기압축기(compressor, 컴프레서)가 상당 기간 작동되지 아니하여 잠수부가 공기를 공급받지 못해 발생한 것입니다.

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, 잠수기어업 중 공기압축기가 정상 가동되는지를 수시로 살피고, 잠수부가 호흡하면서 발생하는 공기 방울을 수시로 확인하여, 잠수부가 잠수작업을 하는 동안 원활하게 공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